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	펀드명	명칭 변경	모펀드 명칭 변경	투자 대상 자산	결산	변동성	변경 사항
1	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○	○	-	-	6), 7), 8), 9)
2	미래에셋연금PanAsia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○	-	-	-	-
3	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9)
4	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-	-
5	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○	○	7), 9)
6	미래에셋디스크버리증권투자신탁3호(주식)	-	-	-	○	-	-
7	미래에셋모아변액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-	-	-	○	-	-)
8	미래에셋연금글로벌로보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6), 8), 9)
9	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(분배형)	-	-	○	○	○	9)
10	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-	-	○	○	○	6), 8), 9)
11	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-	-	○	○	○	6), 9)
12	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9)
13	미래에셋퇴직연금슬로몬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	-	-	○	○	○	9)
14	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○	6), 8), 9)
15	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-	○	○	○	9)
16	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9)
17	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6), 8), 9)
18	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-	-	○	○	○	7), 9)
19	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/1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○	7), 9)
20	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/10증권투자신탁2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○	7), 9)
21	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/10증권투자신탁3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○	6), 7), 8), 9)
22	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/10증권투자신탁4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○	7), 9)
23	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4/15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○	7), 9)
24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○	9)

25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-	-	○	○	○	9)
26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○	7), 9)
27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○	9)
28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6), 8), 9)
29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○	7), 9)
30	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6), 8), 9)
31	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-	○	○	○	7), 9)
32	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-	-	○	○	-	-
33	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○	7), 9)

2. 변경 사항:

- 1) 투자신탁 명칭 변경
- 2)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
- 3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4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6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7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8) 법 개정사항 반영
- 9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3월 3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1) 투자신탁 명칭 변경

- 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투자신탁 명칭>	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미래에셋팬아시아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- 미래에셋연금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투자신탁 명칭>	미래에셋연금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미래에셋연금팬아시아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2)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

- 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- 미래에셋연금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미래에셋 PanAsia 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투자신탁 명칭>	미래에셋 <u>PanAsia</u> 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미래에셋 <u>팬아시아</u> 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
3) 투자대상자산 추가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대상자산 등)	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<신설></u>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</p>
	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<신설></u></p> <p>4.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</p> <p>4.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]</p> <p>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]</p> <p><생략></p> <p><u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
	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</p> <p>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</p> <p><생략></p> <p><u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

4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 < 투자 비용 >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</u>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</u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</u>
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-	<u>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</u>

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9.79</u>	<u>23.03</u>
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5	5	<u>1.14</u>	<u>1.34</u>
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9.94</u>	<u>23.24</u>
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(분배형)	5	5	<u>3.57</u>	<u>4.16</u>
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2	2	<u>15.26</u>	<u>16.64</u>
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5	5	<u>3.57</u>	<u>4.16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1	1	<u>27.6</u>	<u>26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2호(주식)	2	2	<u>22.67</u>	<u>21.82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<u>2.16</u>	<u>1.86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5	5	<u>4.37</u>	<u>4.04</u>
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0.38</u>	<u>20.46</u>
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3.72</u>	<u>22.63</u>
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5	5	<u>0.55</u>	<u>1.15</u>
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/1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72</u>	<u>8.09</u>
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/10증권자투자신탁2호(채권혼합)	4	4	<u>7.67</u>	<u>8.06</u>
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/10증권자투자신탁3호(채권혼합)	4	4	<u>7.68</u>	<u>8.07</u>
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/10증권자투자신탁4호(채권혼합)	4	4	<u>7.77</u>	<u>8.11</u>
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4/15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94</u>	<u>8.24</u>
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5.77</u>	<u>7.21</u>
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<u>3.35</u>	<u>4.12</u>
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6.04</u>	<u>6.84</u>

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5.94</u>	<u>17.8</u>
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6.08</u>	<u>6.88</u>
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2.58</u>	<u>21.79</u>
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3	3	<u>12.68</u>	<u>12.58</u>
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8.54</u>	<u>8.71</u>

6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7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평가방법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(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(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p>

8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13조(자산운용 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42조(집합투자 업자 및 신탁업자 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<u>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 ②~③ <생략> <신설>	①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 ②~③ <생략> ④ <u>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 8. 가. 투 자대상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 자제한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u> 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

9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- <u>일반사무관리회사 : 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 - <u>신탁업자 : 국민은행</u>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삭제>
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회 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